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발표

- 보고 사례 1,285건 분석 결과, 대부분 경미한 증상… 중대한 사례는 없어
- 화장품 사용 시 상처 부위 사용 자제 및 영·유아용 화장품의 알레르기 등 사용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

보고된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향,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 및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

* 보고사례 건수: (‘22)1,004건 → (‘23)1,014건 → (‘24)1,298건 → (‘25)1,285건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특성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사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유아용 제품류 보고비율(%): (‘22)27.5 → (‘23)21.5 → (‘24)32.1 → (‘25)43.2

** 수입 규모(천 달러): (‘22)15,411 → (‘23)13,731 → (‘24)15,957 → (‘25)17,731

또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도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의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5년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기초화장용 제품류 보고비율(%): (‘22)47.7 → (‘23)54.7 → (‘24)44.5 → (‘25)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되었고, 보고 비율은 '22년 이후 증가하다가 '25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인체 세정용 제품류 보고 비율(%): ('22)6.7 → ('23)8.9 → ('24)10.2 → ('25)8.3

**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 : ('24)58건 → ('25)49건

참고로, 지난 '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24.9월 개정)

화장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화장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 안전성정보보고(소비자용)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1. '25년 화장품 유형별 보고사례 현황
2.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담당자	연구관	이지선 (043-719-3403)



(단위: %)

대분류 항목	안전성 정보 보고 현황*	주요 보고 사례
영·유아용 제품류	43.2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열감 등
기초화장용 제품류	37.0	피부염, 트러블, 두드러기, 가려움 등
인체 세정용 제품류	8.3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눈자극 등
두발 염색용제품류	5.8	트러블, 알레르기, 피부염 등
색조화장용 제품류	2.7	피부염, 트러블, 발진 등
두발용 제품류	1.8	가려움, 피부염, 알레르기 등
목욕용 제품류	0.2	발진, 피부염
눈 화장용 제품류	0.2	피부염
채취 방지용 제품류	0.4	발진, 열감, 트러블 등
방향용 제품류	0.3	열감, 가려움, 두드러기
면도용 제품류	0.1	발진, 가려움 등
총합계	100	

* 단순 불만(향 불만, 사용감 불만 등), 잘못된 사용 등은 제외

유형	사용할 때 주의사항
공통사항	○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알갱이 함유 세안제	○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팩	○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삼푸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 가급적 자가 사용을 자제할 것 ○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할 것 ○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눈과의 접촉을 피하고, 눈 또는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 등을 이용해 씻어낼 것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고시)